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6. 22.

발 의 자 : 주승용 · 최도자 · 김동철
박주선 · 박광온 · 이춘석
장정숙 · 강창일 · 김관영
이용주 · 박준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열량·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하며,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,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·금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, 판매업자조차도 해당 식품이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·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·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‘고열량·저영양 식품’임을 표시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

는 것임(안 제12조의3 신설)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표시) ①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제조·가공·수입업자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 식품이 고열량·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9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고열량·저영양 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열량·저영양 식품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2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6의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7. ~ 9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2조의3(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표시) ①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제조·가공·수입업자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 식품이 고열량·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9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6의3.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고열량·저영양 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